

(3) 일반징계위원회는 상기(2)에 해당하지 않는 교육공무원의 징계등 사건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일반징계위원회는 해당 시·군·구 교육행정기관 소속 교사에 대한 경징계 또는 경징계 관련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에 한정하여 심의·의결한다.

자) 징계위원회의 설치(「교육공무원징계령」 제3조)

(1) 특별징계위원회는 교육부에 둔다.

(2) 일반징계위원회는 시·도 교육행정기관 및 시·군·구 교육행정기관에 둔다.

차) 징계위원회의 구성(「교육공무원징계령」 제4조) <개정 2019. 2. 26.>

(1) 특별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일반징계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특별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교육부 소속 실장·국장급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퇴직일부터 3년이 지난 사람으로 한정한다)

(라) 교장으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일반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설치기관의 장의 차순위자가 되고, 위원은 그 설치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장학관·교육연구관·조교수 이상의 교육공무원 및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그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시·군·구 교육행정 기관에 두는 일반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 중 일부를 그 관할구역 안의 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교원위원이 아닌 사람

(나)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대학에서 법률학·행정학·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만, 대학에 두는 일반징계위원회의 경우 해당 대학 소속인 사람은 제외한다.

(라)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다만, 퇴직 전 5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소속되었던 적이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년이 지난 사람으로 한정한다.

① 일반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

② ①목에 따른 기관이 시·도 교육행정기관인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그 소속기관[「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5호에 따른 직속기관을 말한다. 이하 ③목④에서 같다]